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99
----------	-----

2019. 6. 24.(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심기보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9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6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6월 13일

-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심기보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법제처의 법령 입안·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어표기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1조(목적)에 사용된 약어 표기를 삭제하고 제2조로 이동 (안 제1, 2조)
- 도지사 및 충청북도에 대한 약어 표기 사용 (안 제2, 3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최영지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법제처의 법령 입안·심사기준에 따라 제1조(목적)에 사용된 약어 표기를 제2조로 옮기고, 필요한 약어표기를 추가하였으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

- 안 제1조에서는 법령 입안·심사 기준에 따라 약어표기를 제2조로 옮기고,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“충청북도고문변호사” 를 “충청북도∨고문변호사” 로 개정함.
- 안 제2조에서는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약어표기를 추가하고,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“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” 를 “개업∨중인 변호사∨중에서” 로 개정함.
- 안 제3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 일상적 변호 활동 수행에 있어 기피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바, 조 제목을 “(업무)” 에서 “(업무 등)” 으로 개정하였고, 충청북도에 대한 약어 표기를 추가함.
-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·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 등 일부를 정비한 것으로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 법적 문제가 없으며 내용 및 절차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참고자료>

□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위촉 및 실적 현황

- 위촉 근거: 「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조례」 제2조(위촉)
- 도지사는 ~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고,
- 위촉 인원수: 5명 (19. 5. 기준)
- 자문 실적: 법령해석, 행정심판, 소송사건, 법률 등 자문 (16. 1.~19. 5.)

구분	총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건수	64	9	9	16	30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고문번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기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5월 31일

발의자 : 심기보, 박상돈, 박형용,
육미선, 이상욱, 최경천,
이상식

1.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법령 입안·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어표기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1조(목적)에 사용된 약어 표기를 삭제하고 제2조로 이동 (안 제1, 2조)
- 나. 도지사 및 충청북도에 대한 약어 표기 사용 (안 제2, 3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- 나. 협의 :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
- 다.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고문변호사(이하 “고문변호사” 라 한다)” 를
“충청북도 고문변호사” 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도지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” 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
“도지사“라 한다)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” 로, “고문변호사” 를 “충
청북도 고문변호사(이하 “고문변호사” 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업무)” 를 “(업무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
“도” 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청북도고문변호사(이하 “고문변호사“라 한다)</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충청북도 고문변호사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위촉) ① <u>도지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고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비위 등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위촉) ①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“라 한다)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----- 충청북도 고문변호사(이하 “고문변호사“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업무) ① <u>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도가 위임하는 쟁송사건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업무 등) ①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</u>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